

생식건강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서 경

Reproductive Health

Kyung Seo, M.D., M.P.H., Ph.D.

Department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New “law for maternal and child health” newly included the term “reproductive health”. The purpose of including reproductive health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maternal and child health, was to provide legal ground for providing comprehensive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including programs for infertile couples. Reproductive health was defined as “a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and not merely the absence of disease or infirmity, in all matters relating to the reproductive system and to its functions and processes” at Cairo during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1994. Reproductive health therefore implies that people are able to have a satisfying and safe sex life and that they have the capability to reproduce and the freedom to decide if, when and how often to do so. Korean government programs restoring fertility should proceed with considering reproductive health of Korean population.

Key Words: Reproductive health, Reproductive right

2009년 1월 7일 모자보건법이 개정 공포되었다¹. 이번 개정의 주된 내용은 첫째 모성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모자보건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둘째 불임 등 생식건강 문제의 극복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셋째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넷째 산후 조리원에서의 감염, 질병, 안전사고 등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사실 보고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모자보건법의 취지에 따라 개정된 모자보건법에는 생식(reproduction), 생식건강(reproductive health)이라는 용어가 다음과 같이 새로 등장하였다.

제2조 (정의)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

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 (모성 등의 의무) ① 모성은 임신·분만·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3.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 (불임 극복 지원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생식건강(reproductive health)이라는 용어는 1994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국제연합(UN) 인구 및 개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의 실행 프로그램(programme of action)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정의를 기술하였다.² 실행 프로그램은 모두

접 수 일 : 2009. 1. 28.
채 택 일 : 2009. 3. 10.
교신저자 : 서 경
E-mail : kyungseo@yuhs.ac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인구, 경제성장, 개발, 성 평등, 가족, 생식권 및 생식건강, 보건, 교육, 기술발전, 국제협력 등 광범위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실행 프로그램 (programme of action) 7장의 제목은 “Reproductive Rights and Reproductive Health”로서 여기에서 생식건강 (reproductive health) 및 생식권 (reproductive right)을 다 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생식건강이란 생식기관, 생식기능 및 생식과정과 관련 된 질병이나 불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이다 (Reproductive health is a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and not merely the absence of disease or infirmity, in all matters relating to the reproductive system and to its functions and processes). 따라서 생식 건강이란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언제, 얼마만큼의 자녀를 출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Reproductive health therefore implies that people are able to have a satisfying and safe sex life and that they have the capability to reproduce and the freedom to decide if, when and how often to do so). 또한 생식권은 개인과 부부가 자녀의 수, 출산 간격, 출산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그와 관련된 정보와 수단을 활용할 권리를 포함하며 나아가 최고 수준의 성건강 및 생식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Reproductive rights rest on the recognition

of the basic right of all couples and individuals to decide freely and responsibly the number, spacing and timing of their children and to have the information and means to do so, and the right to attain the highest standard of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라고 정의하고 있다.

생식건강은 기존의 모자보건 (maternal and child health)이 주로 임신, 출산과 관련된 모성 및 아동 건강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여기에 더하여 가족계획, 인공임신중절, AIDS 등 성병 문제, 성건강 (sexual health) 등 생식기관 및 생식기능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총망라하고 있는 광의의 개념이다. 따라서 생식건강은 임신, 분만, 산욕기 기간 이외에도 여성의 전 생애에 걸쳐 생식기관과 연관된 건강 문제를 포괄하고 있으며 남녀를 포함하고 나아가 성건강까지 포함하고 있다. 생식보건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 하게 산재해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인공임신 중절, AIDS 등 성 매개 질환, 성기절제 (genital mutilation), 성폭력 등 생식건강의 문제가 여성의 주된 보건 문제이며 이들 문제들은 경제사회개발, 교육, 여성지위 향상 등과 연관되므로 궁극적으로 생식건강이라는 용어는 모자 보건의 개념을 남녀의 전 생애에 걸친 생식건강의 범위로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건강의 개념을 성 평 등 및 인권의 차원으로까지 승화시킨 획기적인 용어이다.

생식건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1994년 카이로 ICPD 선언 당시 향후 20년 이내에 전 세계

Table 1. The 17 indicators of reproductive health, WHO

Total fertility rate.
Contraceptive prevalence.
Maternal mortality ratio.
Percentage of women attended, at least once during pregnancy, by skilled health personnel for reasons relating to pregnancy.
Percentage of births attended by skilled health personnel.
Number of facilities with functioning basic essential obstetric care per 500 population.
Number of facilities with functioning comprehensive essential obstetric care per 500,000 population.
Perinatal mortality rate.
Percentage of live births of low birth weight.
Positive syphilis serology prevalence in pregnant women attending for antenatal care.
Percentage of women of reproductive age screened for haemoglobin levels who are anaemic.
Percentage of obstetric and gynaecological admissions owing to abortion.
Reported prevalence of women with FGM.
Percentage of women of reproductive age at risk of pregnancy who report trying for a pregnancy for two years or more.
Reported incidence of urethritis in men.
HIV prevalence in pregnant women.
Knowledge of HIV-related prevention practices.

Table 2. Millennium Development Goal (MDG)

1.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2.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3. 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4. Reduce child mortality.
5. Improve maternal health.
6. 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7. 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8. Develop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인류의 생식건강을 바람직한 수준으로 증진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한바 있다. 이들 목표들은 5년 후인 1999년 6월 (ICPD+5) UN총회에서 ICPD 실행프로그램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 생식건강관리, 모성사망 감소, HIV/AIDS의 4가지 핵심 부분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³, 10년 후인 2004년 (ICPD+10) UN인구기금 (UNFPA) 주관하에 중간평가를 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생식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표지표로서 17개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Table 1). 생식건강의 주요 지표들은 2001년 UN이 제시한 경제사회개발 지표인 8개의 밀레니움 개발 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중 4, 5, 6 세 부분에 반영하고 있다 (Table 2)⁴.

한국의 모자보건 사업은 종종 인구 및 가족계획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다. 1960년대 출산력이 높았던 시기에는 출산력을 낮추기 위한 가족계획 사업이 우선 사업이었고 공공부문의 모자보건 사업은 가족계획 사업 수행을 위한 서비스 정도로 간주되어 왔다. 그와

반대로 이제는 저출산의 시대를 맞아 모자보건사업이 불임 부부 지원 및 출산환경 조성 등 오로지 출산력 증가를 위한 방향으로 올인하고 있으며, 반대로 피임 등 가족계획 사업의 지원 확대방안은 거론할 수 없는 분위기이다. 금번에 개정된 모자보건사업에서 생식건강으로 모자보건 사업의 개념을 확대한 이유 중의 하나도 출산력 회복을 위한 불임부부 지원 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생식건강의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 피임의 경우 불임수술 및 피임시술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가족계획 사업의 하나로 국가가 필요한 부부에게 이들 불임수술 및 불임시술을 제공할 근거가 없어졌다. 또한 기존 모자보건법에서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조항도 수정되지 못했다⁵. 그러나 이와 같은 출산력 제고정책은 인공임신중절, 불임치료나 고연령 임신 및 출산에 수반되는 여성 및 출생아의 건강 문제 등의 생식건강의 문제들을 악화시킬 가능성을 등한시하고 있다.

모자보건이나 생식건강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구의 건강 증진에 있으며 나아가 생식건강 및 생식권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누구나 자녀의 수, 출산 간격, 출산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민의 건강과 인권의 목표는 모든 국가 정책에서 항상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저출산 시대의 한국의 인구정책도 이와 같은 생식건강의 관점에서 제반 문제들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모자보건법, 법률 제9333호, 2009.1.7., 일부개정.
2. Chapter VII. Reproductive rights and reproductive health. In: Programme of Action adop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1994. Available from: URL:<http://www.unfpa.org/icpd/icpd-programme.cfm#ch7>
3. Key Actions for the Further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me of Action of the ICPD -- ICPD+5. Available from: URL:<http://www.unfpa.org/icpd/icpd5-keyactions.cfm>
4. Improve maternal health. Available from: URL:<http://www.mdgmonitor.org/goal5.cfm>
5. 서경. 보건의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 임신중절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생명윤리 2006; 7: 9-14.

= 국문초록 =

2009년 1월 7일 모자보건법이 개정 공포되었으며 개정된 모자보건법에는 생식 (reproduction), 생식건강 (reproductive health)이라는 용어가 새로 등장하였다. 생식건강이라는 용어는 1994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국제연합 (UN) 인구 및 개발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의 실행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정의를 기술하였다. 생식건강이란 생식기관, 생식기능 및 생식과정과 관련된 질병이나 불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이다. 한국의 모자보건 사업은 종종 인구 및 가족계획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금번에 개정된 모자보건사업에서 생식건강으로 모자보건 사업의 개념을 확대한 이유 중의 하나도 출산력회복을 위한 불임부부 지원 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자보건이나 생식건강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구의 건강 증진에 있으며 나아가 생식건강 및 생식권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누구나 자녀의 수, 출산 간격, 출산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민의 건강과 인권의 목표는 모든 국가 정책에서 항상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중심단어: 생식건강, 생식권
